2022년 편집위원회 변경사항 보고 및 토의

(2022. 2. 24)

**<변경 사항>**

1. 편집위원회 메일 변경 : [kafeedit@naver.com](mailto:kafeedit@naver.com) (학회메일 : [kafe2022@naver.com](mailto:kafe2022@naver.com) 으로 변경)

**<토의 사항>**

1. 관련 규정 개정: 투고료 영구회원 10만원 면제
2. 논문 심사위원 3명 🡺 2명으로 조정
3. 학회지발간 : 책자 인쇄 송부(200부) 🡺 pdf 파일 발송으로 전환 (인쇄본은 최소규모 발행)

1. 편집위원 메일 주소 변경

|  |  |
| --- | --- |
| 기존 메일: [kafe@changwon.ac.kr](mailto:kafe@changwon.ac.kr) | 변경 메일: [kafeedit@naver.com](mailto:kafeedit@naver.com)  2022년 2월 1일부터 사용 |
| 변경사유 : 창원대 메일 보안 문제로 더 이상 사용 불가 통보 | |

2. 관련 규정 개정: 심사료 영구회원 10만원 면제

- 영구회원의 경우 심사료 10만원은 전면 면제함 (복수 저자의 경우 1인만 영구회원이면 가능)

- **변경사유** 1) 재무학회 등 다수 학회에서 심사료 면제하여 논문투고 편수 증가를 유도하고 있음.

2) 영구회원에게 평생 혜택 부여를 통해 영구회원 가입 및 회원비 증대 유도

|  |  |
| --- | --- |
| 기존(금융공학연구 투고규정) | **변경(금융공학연구 투고규정)** |
| **제5조 (심사요청)** 본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연구재단 온라인논문투고 심사시스템(JAMS)의 투고절차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며, 심사료 1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. 단, 게재확정시에는 논문게재료 20만원(연구비사사 표시논문의 경우에는 30만원)을 추가 입금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6. 4.> <개정 2007. 1. 3.> <개정 2007. 12. 8.> <개정 2011. 8. 23.> <개정 2012. 2. 21.> <개정 2013. 3. 27.> <개정 2019. 3. 1.> <개정 2019. 10. 26.> | **제5조 (심사요청)** ① 본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연구재단 온라인논문투고 심사시스템(JAMS)의 투고절차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며, 심사료 1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. **단, 영구회원의 심사료는 본 학회에서 지원한다. 복수저자 투고시 1인 이상의 저자가 영구회원이면 동일하게 적용한다.** <개정 2005. 6. 4.> <개정 2007. 1. 3.> <개정 2007. 12. 8.> <개정 2011. 8. 23.> <개정 2012. 2. 21.> <개정 2013. 3. 27.> <개정 2019. 3. 1.> <개정 2019. 10. 26.> **<개정 2022. 3. 31.>**  ② 게재확정시에는 논문게재료 20만원(연구비사사 표시논문의 경우에는 30만원)을 추가 입금하여야 한다. |

3. 관련 규정 개정: 심사위원 3명 🡺 2명으로 조정

- **변경사유** : 대부분의 학회에서 심사위원을 2명으로 운영 중임

|  |  |
| --- | --- |
| 기존(금융공학연구 심사규정) | **변경(금융공학연구 심사규정)** |
| 제2조 (심사자의 선정)  ②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에게 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들을 추천 받거나 직접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한다. <개정 2008. 5. 16.> <개정 2011. 8. 23.> <개정 2015. 3. 20.> | 제2조 (심사자의 선정)  ②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에게 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들을 추천 받거나 직접 심사위원 **2명을** 선정한다. <개정 2008. 5. 16.> <개정 2011. 8. 23.> <개정 2015. 3. 20.> **<개정 2022. 3. 31.>** |
| 제7조 (게재조건에 대한 처리방법)  ① 심사자 3인의 게재조건에 대한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 2009. 12. 5.> <개정 2011. 8. 23.> 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| 평점 총합 | 종합판정 | 처리 | 비고 | | 81-90점 | A | 게재가능 | 수정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| | 72-80점 | B | 수정 후 게재 가능 | 수정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 수정여부 확인 | | 54-71점 | C | 수정 후 재심사 | 수정된 논문은 심사자 또는 제 3의 심사자에게 다시 회부 | | 54점 미만 | D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통보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게재불가 확정 | | 제7조 (게재조건에 대한 처리방법)  ① 심사자 **2인의** 게재조건에 대한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. <개정 2009. 12. 5.> <개정 2011. 8. 23.> **<개정 2022. 3. 31.>** 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| 평점 총합 | 종합판정 | 처리 | 비고 | | **54-60점** | A | 게재가능 | 수정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| | **48-53점** | B | 수정 후 게재 가능 | 수정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 수정여부 확인 | | **36-47점** | C | 수정 후 재심사 | 수정된 논문은 심사자 또는 제 3의 심사자에게 다시 회부 | | **36점 미만** | D | 게재불가 | 게재불가 통보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게재불가 확정 | |
| ② 제7조 제①항의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본 항의 처리 기준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.  1. 3명의 심사자 중 1명이라도 ｢D(합계 18점 미만): 게재불가｣ 의견을 제시한 경우와 3명의 심사자 중 2명이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. <개정 2016. 3. 1.> | ② 제7조 제①항의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본 항의 처리 기준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.  1. **2명의** 심사자 중 1명이라도 ｢D(합계 18점 미만): 게재불가｣ 의견을 제시한 **경우에는 제3의 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. 만일 제3의 심사자가**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. <개정 2016. 3. 1.> **<개정 2022. 3. 31.>** |
| 2. 평점 총합에 의한 종합판정 결과 A 혹은 B로 판정받았더라도 3명의 심사자 중 ｢C(합계 18-23점): 수정 후 재심사｣로 의견을 제시한 심사자가 있는 경우 수정논문을 당해 심사자에게 재심사 의뢰한다. | 2. 평점 총합에 의한 종합판정 결과 A 혹은 B로 판정받았더라도 **2명의** 심사자 중 ｢C(합계 18-23점): 수정 후 재심사｣로 의견을 제시한 심사자가 있는 경우 수정논문을 당해 심사자에게 재심사 의뢰한다. **<개정 2022. 3. 31.>** |
| 3. 심사논문은 3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B이상의 최종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게재할 수 있다. | 3. 심사논문은 **2명**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B이상의 최종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게재할 수 있다. **<개정 2022. 3. 31.>** |
| 제7조의2 (게재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방법)  게재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, 편집간사, 해당 논문분야의 전문편집위원(편집위원장 위촉) 3인이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한다. <개정 2015. 3. 20.> <개정 2016. 3. 1> | 제7조의2 (게재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방법)  게재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, 편집간사, 해당 논문분야의 전문편집위원(편집위원장 위촉) **2인이**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한다. <개정 2015. 3. 20.> <개정 2016. 3. 1.> **<개정 2022. 3. 31.>** |

4. 학회지 발간 : 책자로 인쇄하여 발간 및 송부 🡺 pdf 파일 송부

- 변경사유 : 학술지 발간비, 우편비 절감 필요, 책자보다 pdf 파일에 대한 회원의 활용도가 높음.

최근 pdf 학술지 발간이 늘고 있으며, 일부 학회에서는 전면 pdf 파일로만 발행

\*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게도 발송되는 불합리성 개선 필요

- 시행시기 : 2022년 3월호 (제21권 1호) 부터

- 책자인쇄 발간 : 기관회원(도서관, 법인회원) 및 소장용으로 최소한의 부수 발간 (100부 미만)

- 발간부수 : 기존 매호마다 200부 발간 🡺 50부 발간 (영구회원의 경우 요청시 발송 가능)